

2024년 7월 11일-18일  
이룸 학생회 회칙 제정에  
대한 안건

작성자: 강○은 권○아 박○영



# 1. 회의 개요

일시/장소	2024. 7. 11.(목)-2024. 7. 18. 13:00~13:25 / 학생회실			
참여 인원	총원	참석	불참	비고 (불참사유)
	21명	21명		
보고 사항	1)			
회의 안건	1) 학생회 회칙 제정			
의결사항	1)			
비고				
확인	작성자	문헌기록부장	학생회장	
	권○아 (인), 박○영 (인)	강○은 (인)	이○향 (인)	

## 2. 회의 내용

### ① 개회

- 참여 부서: 학생회장단, 기획재정부, 대외정보부, 행사부, 홍보부, 문헌기록부 (총 21인)

### ① 결과 보고

### ② 안건 제시

- 대표발의자: 학생회장 이○향
- 1) 학생회 회칙 제정

### ③ 안건 발의 및 의결사항

- 1) 학생회 회칙 제정

- 발의: 학생회장 이○향
- 사유: 학생회 회칙 신설
- 의견 제시

[1] 참고한 전주여자고등학교의 학생회 회칙(이하 참고 회칙이라고 칭함) 제6조 1항 3호에서 각 부의 구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부장과 차장의 수에 대해 의논하여 각 부 부장 1명, 차장 1~3인으로 구성할 것을 가결함.

[2]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6조 4항을 제정하여 학생회와 각 반 실장, 부실장의 겸임을 금함.

[3] 참고 회칙 제7조 1항 2호에서 비밀 선거라고 명시된 내용을 일반 선거의 특성을 따라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 선거라고 수정함.

[4] 제8조(자격 정지)를 제정하여 학생회장단과 학생 임원의 자격 정지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함. 자격 정지 심의위원회는 학생회 8명과 대의원회 각 학년 2~3인으로 구성하여 꾸리고, 학생회장단의 자격 정지는 재적 인원의 5분의 4, 학생회 임원은 4분의 3이 찬성해야 자격 정지를 건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함.

[5] 회칙 제 2장은 대의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대의원회의 목적과 기능, 정기회의, 임시회의 소집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의논해 제정함.

[6] 제19조 2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학생회 임원 10인 내외로 선거 3주 전에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함.

[7] 제20조 2항을 제정하여 입후보자 등록 기간 이외 기간에 후보자의 등록과 사퇴를 금함.

[8] 제21조 1항의 선거운동 기간을 학교 실정에 맞게 입후보자 공고에 명시된 기간으로 정함.

[9] 참조 회칙의 제21조 6항은 현재 학교 실정에 필요 없다 생각되어 후보자 공약 심의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함.

[10] 제23조 2항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로 각 후보가 1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함.

[11] 제23조 3항은 투표참관인의 인원 제한을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함.

[12] 제26조 1항에 선관위의 구성 일자(선거 3주 전)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함.

- 의결 사항

[1]

#### **④ 폐회**

#### **⑤ 기타**

- 7/18 대의원회를 통해 학생회 회칙을 확정하기로 함.